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(8공구)]

- 점검일시 : 2017.11.06 (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박철호

○ 기계기구 안전(토목부)

- 철근절곡기, 절단기 등은 매월 점검후 사용하
여야 하나, 9월 점검 필증이 부착되어 있음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8(위험기계, 기구
안전검사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한 자재운반구는 인양중
낙하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금지 요망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3(자재운반구)

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부를 고정 조치 요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4(사다리(일자형)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토목부)

- 달기구(샤클 등)는 인증제품을 사용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68조(변형되어 있는 훅,샤클 등의 사용 금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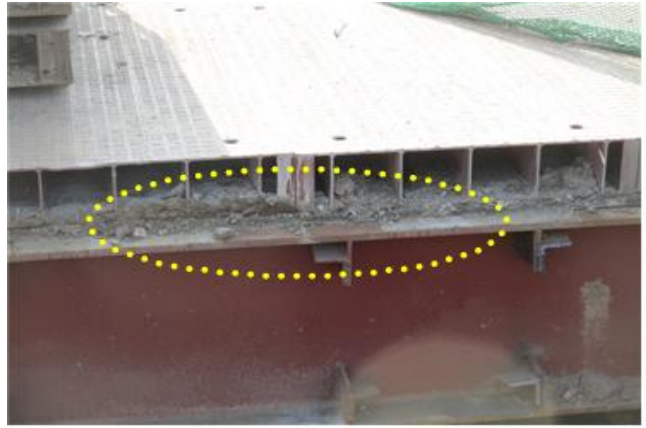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자재 인양용 개구부의 주형보에 볼트, 자갈 등은 하부로 낙하하기 쉬우므로 제거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

○ 품질관리(토목부)

- 적재 및 보관중인 철근자재는 지면에 접촉되어 있어 우수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받침목을 사용하여 적재 요망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위험물 보관소의 산소는 실병과 공병을 구분하여 보관하고, 외부에 소화기를 비치 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(위험물 보관소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자재 인양용 개구부에 안전난간으로 사용중인 강관은 보호캡을 설치 요망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소화기는 정기적으로(매월 1회 이상)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소화기는 즉시 교체 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9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발전기와 연결하여 사용중인 분전함은 관리책임자가 미선임되어 있으므로 조치 요망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6(분전반)

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항공마대는 철근 등 날카로운 물체는 적재금지
요망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14(항공마대)

